

분도	필요	·	불요
방법	자료제공, 특집, 화건(설명)		
과장		국	상

## 기안용지

분류기호	A설 30210 ~ 115	(전화: )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b>시 장</b>	
수신처 보존기간	영구		
시행일자	89. 4. 2		
보조 기관	서울계획과 「전결」 가로계획과	협조 기관	법무 장관 관 협조 통제관
기안책임자	홍상만	문 신 제 제 15.02 통제관	발 송 인
경유 수신 참조	각 안 참조	발 신 명 의	시 장
제 목	도시 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제1안): 내부 결재			
1. 마포도정 30500-1572(88.11.29) 및 (89.12.29)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마포구청장으로 부터 도시 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서고 402호 79.9.12)된 도로(B=8m)중 주민수원 사업으로 도로 확장공사(기간 88.4.4 ~ 89.10.12)시 행중 도로상행 굴곡부를 완화(B=1m L=83m 중 11m)해 팔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저촉로지주의 토지사용승낙 및 상대주민의 토지 매입 동의를 얻어 별첨과 같이 공사 완료 하여 마포구청장으로 부터			

이를 변경 조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2. 본건 계획 특원 8에로서 직선이 가장게 조정이  
되도록 도시계획법 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조2. 규정에 의거  
첨부 도면과 같이 변경 결정코리 합니다.

첨부 : 일건 서류 (고시문) 붙.

(제2단)

수신 : 건설부 장관

참조 : 도시 시설 계획과장

제목 : 도시 계획 시설 (도로) 변경 결정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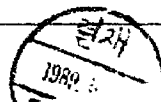
1. 우리시 관내 도시 계획 시설 (도로)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변경 하였기 보고 합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붙.

(제3단)

수신 : 총무처 장관

제목 : 관보 게재 의뢰



1. 별첨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89.5.2)의 내용을  
관보 게재 의뢰 하오니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2부 붙.

(제4안)

수신 : 마포구청장

참조 : 도시정비과장

제목 : 같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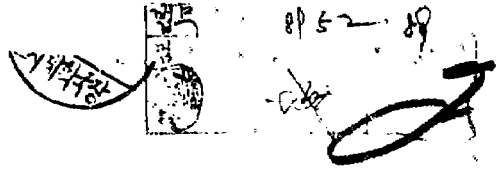
1. 도점 카이씨 - 1672 (88. 12. 29) 와 관련임

2. 위로로 변경 요청한 키구관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별첨고시문 수분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도르) 을 변경  
결정하였기 통보하시 관계되면 정리하여 도시계획업무  
에 착오 없도록 하고 도시계획법 제 13조에 의한 지적승  
인을 시행후 보고 하기 바랍

첨부 : 고시문사본 및 도면 각 1부.

고 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 제12조1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1항1호나목,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하였기 같은법 제12조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적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5.

서울특별시장

가. 시설조서

번호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고
1	기정	소로	2	8	83	성산동572-11	서교동247-90	선형
	변경	"	"	"	"	"	"	변경 선상 83 11번변경

나. 도면 : 마포구청 비치도면과 같음. 끝.